

#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120대 국정과제 13. 「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위원회 정비」
-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위원회의 안전 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비효율적 운영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정비
-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조문 정비

## 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

(안 제6조5항 및 안 제7조제1항)

나.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제1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참조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4. 02. 07. ~ 2024. 02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[기획실-2219 (2024.02.05.)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없음[기획실-2219 (2024.02.05.)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할 사항 없음[가족복지과-8297 (2024.03.06.)]
- 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실-4121(2024.03.12.)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4720(2024.03.22.)]

##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2조 제1항”을 “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제4조에서”를 “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”로, “제9조”를 “제11조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광고물의 특례)”를 “(광고물 등의 특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지역에서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,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상설화로 안전이 발생하면 개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	이 조례는 「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	-----	「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18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	이 조례에서 “산양삼 특구”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「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제4조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	-----	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(이하 ----- ---- 제11조----- -----.
제4조(광고물의 특례)	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특구지역에서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특례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	제4조(광고물 등의 특례)	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지역에서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,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.	

②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~ ④  
(생략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(생략)

제7조(위원회의 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~ ④  
(현행과 같음)

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의 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상설화로 안전이 발생하면 개최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

**제11조(특화특구의 지정 등)**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(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, 관할 시·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8조(조례의 제정)** 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·개정·폐지할 수 있다.

## **제34조(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**

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 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**제4조(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)**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·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·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)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공중보건,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 :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산림과장 이 성 모
연락처	(033) 330 - 2450